

#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대외협력사업부 시행세칙

##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

### 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(이하 '본 학회'라 함)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(제 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)에 의거 대외협력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사업부의 업무)

- 대외협력사업부는 학회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국내외 섭외 유치, 기업과 연계사업, 봉사사업, 학회발전을 위한 자료,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적극 관장한다.
- 대외협력사업부는 유관기관, 대학, 산업체 섭외를 통하여 MOU 체결 업무를 담당하며, 대외 프로젝트 등을 유치 관장한다.
- 산하에 대외협력분과, 기업분과를 두고, 각 1~2명의 부회장을 둔다.

### 제3조 (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)

1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2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,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TF팀을 둘수 있으며,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업 수행)

1.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,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2.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